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나20074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나20074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5339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하희진

피고, 항소인 1.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주식회사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전중혁, 백연수

변론 종결 2021. 7. 8.

판결 선고 2021. 7.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53398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51,233,000원, 원고 C에게 48,283,000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원고 E에게 30,000,000원, 원고 F에게 30,000,000원, 원고 G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은 장차 사업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이를 추진 중에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6개동, 오피스텔 1개동이 신축될 것을 전제로 원고들로부터 8층 이상의 동·호수 신청을 받은 다음, 동·호수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원고별로 다른 금액의 분담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축될 건물의 규모를 결정짓는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현황(용도지역)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7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원고들이 장차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므로,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더라면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는, 영업직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을 함으로써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담당 직원들에게 "허위사실 내지 과대광고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일반추상적인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김길량

판사김용민